

---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 제1조 (목적)

본 기준 및 절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의거하여 (주)창조투자자문(이하 "회사"라 한다.)이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 수수료 부가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등 (이하"관련법규")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 및 회사의 관련 내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 (수수료의 구분)

본 기준에서 "수수료"라 함은 일임 및 자문자산에 적용되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 서 아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① "기본수수료"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투자자문 또는 일임운용의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고정적으로 선취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 ② "성과수수료"

운용성과에 연동하여 투자자문 또는 일임운용 만기, 중도해지시 사전에 정한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에 사전에 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기본수수료 외에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 ③ "중도해지수수료"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계약의 중도해지시 사전에 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 제4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투자자의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 제5조 (수수료 체계)

투자자는 회사와 투자자문 계약 또는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기본으로 투자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 6 조 (수수료의 부과절차)

수수료 수준은 운용자산의 특성, 포트폴리오의 규모, 요구되어지는 서비스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 하여 개별투자자 기준으로 결정한다.



제7조 (계약의 중도해지시 부과절차)

- ①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이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운용경과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
- ② 계약의 중도해지시 해당계약과 관련한 대가를 미리 지급받은 때에는 기수령한 선취수수료에서 경과 운용일수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중도해지수수료를 차감한 후 투자자에게 반환한다.
- ③ 계약의 해제 또는 중도해지시 회사는 별지 "투자일임수수료의 산정과 지급방법"에 의거하여 계산된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한다.

제8조(설명의무)

회사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 투자자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의 고지)

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보고서에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공시)

회사는 이 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본 기준 및 절차는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기준 시행 전에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본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6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 투자일임수수료의 산정과 지급방법

투자일임수수료

1. 갑은 을이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대가로서 제19조에서 정한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1) 기본수수료 : 투자일임자산의 연 1.5%

2) 성과수수료 : 투자일임자산의 목표수익률 (7%) 초과시 초과수익의 (20%) 지급

[목표수익률은 계약기간 중 투자일임자산의 증감이 있는 경우 일할 계산한다.]

2. 갑은 본 계약 체결일 당일 을에게 기본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성과수수료는 계약 종료일부터 3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3. 갑은 본 계약의 계약만기 또는 계약해지시 성과수수료 지급조건을 충족시켰을 경우 계약만기일 또는 계약해지일에 성과수수료의 전부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본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하는 시점에 투자일임자산을 평가한 평가금액이 계약금액보다 적은 경우 재계약시 기본수수료 및 재계약 투자일임자산의 성과수수료는 아래에 의해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기본수수료

갑은 재계약전 투자일임자산 평가금액 또는 재연장시 투자일임자산에 (투자일임자산의 연 1.5%)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본수수료로 을에게 재계약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2) 성과수수료

갑은 직전 계약기간 만기일에 원금손실이 발생하여 재연장되는 경우 아래에 의해 산출된 투자일임자산 계약금액을 성과수수료 정산 기준 투자일임자산 계약금액으로 한다. 또한, 재계약기간 중 투자일임자산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 되는 경우 제20조 4호의 목표수익률은 투자일임자산 계약금액의 변경 전후를 기준으로 각각 일할계산한다.

가. 직전 계약기간 만기일의 투자일임자산 평가금액 전액을 재연장하는 경우 직전 계약기간 투자일임자산 계약금액을 성과수수료 정산 기준 투자일임자산 계약금액으로 한다.

나. 직전 계약기간 만기일의 투자일임자산 평가금액에서 기본수수료 및 투자일임자산 일부를 출금(감액)한 후 재연장하는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성과수수료 정산 기준 투자일임자산 계약 금액으로 한다.

1) A = 직전 계약기간 만기일 투자일임자산 평가금액 - 기본수수료 및 투자일임자산 출금금액

2) B = A / 직전 계약기간 만기일 투자일임자산 평가금액 X 직전 계약기간 만기일의 운용손실금액



3) 성과수수료 정산 기준 투자일임자산 계약금액 = A + B

다. 재연장 계약기간 중 상기 각호의 투자일임자산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성과수수료 정산 기준 투자일임자산 계약금액으로 한다.

1) A = 변경 전 계약금액 - 감액금액

2) B = 감액금액 / (직전 계약기간 만기일 평가금액 - 기본수수료 및 투자일임자산 출금금액)

3) C = B X 직전 계약기간 만기일의 운용손실금액 X 미경과일수 / 계약일수

\*\* 재계약시점에 투자일임자산 출금(수수료 및 감액)이 있는 경우 조정 후 운용손실금액 기준

4) 성과수수료 정산 기준 투자일임자산 계약금액 = A - C

라. 재연장 계약기간 중 상기 각호의 투자일임자산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상기 각호의 투자일임자산 계약금액에서 증액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성과수수료 정산 기준 투자일임자산 계약금액으로 한다.

5. 본 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일부 해지시에는 본 계약에서 정한 기본수수료 선납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미경과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갑에게 중도해지일 또는 일부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 반환한다 .

6. 본 계약기간 중 투자일임자산이 증액되는 경우 아래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본수수료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증액금액 x 계약기간 미경과일수 / 계약일수 x 기본수수료율 ]

